

p.8

기 존	산재보험료	사용자100%부담	$\Sigma(\text{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times \text{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	사용자100%부담	원칙	$\Sigma(\text{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times \text{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예외			출퇴근 재해 중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 결정시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	

p.9

기 존	보험료를 결정	매년 6.30.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frac{\text{보험급여총액}}{\text{보수총액}}$ 의 비율을 기초로,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및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료를 정할 때 특정사업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은 전체사업 평균산재보험료율의 20배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정사업종류의 산재보험료율 인상or인하시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매년 6.30.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frac{\text{보험급여총액}}{\text{보수총액}}$ 의 비율을 기초로,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및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사재보험급여총액에 불포함). ⇒ 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료를 정할 때 특정사업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은 전체사업 평균산재보험료율의 20배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정사업종류의 산재보험료율 인상or인하시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수 정	원칙	매년 6.30.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frac{\text{보험급여총액}}{\text{보수총액}}$ 의 비율을 기초로,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및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사재보험급여총액에 불포함). ⇒ 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료를 정할 때 특정사업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은 전체사업 평균산재보험료율의 20배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정사업종류의 산재보험료율 인상or인하시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예외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재해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or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 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 결정시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

p.10-1

기 존	개별실적요율	고용보험 -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 - 개별실적요율 노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 중 일괄적용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p>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총공사금액은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공단승인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p> <p>건설업 및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이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p>	
	매년 9.30 현재 보험관계 성립후 3년 지난 사업이	매년 6.30 현재 보험관계 성립후 3년 지난 사업이		
	<p>지난 3년 동안 실업급여금액 실업급여보험료 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해당시</p> <p>실업급여보험료율의 4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 실업급여보험료율 인상·인하 할수있다.</p>	<p>지난 3년 동안 산재보험급여금액 산재보험료 의 비율이 85% 이상(인상) 이거나 75% 이하(인하)인 경우</p> <p>산재보험료율의 50%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 인상·인하 할수있다.</p>		
수정	개별실적요율	고용보험 -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 - 개별실적요율 노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無)으로서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p> <p>건설업 중 일괄적용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총공사금액은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공단승인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p> <p>건설업 및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p>	
		매년 9.30 현재 보험관계 성립후 3년 지난 사업이	매년 6.30 현재 보험관계 성립후 3년 지난 사업이	
		<p>지난 3년 동안 실업급여금액 실업급여보험료 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해당시</p> <p>실업급여보험료율의 4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 실업급여보험료율 인상·인하 할수있다.</p>	<p>지난 3년 동안 산재보험급여금액 산재보험료 의 비율이 85% 이상(인상) 이거나 75% 이하(인하)인 경우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에 불포함)</p> <p>산재보험료율의 50%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인상·인하한 비율을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p>	
		실업급여보험료율의 40%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 실업급여보험료율 인상·인하 할수있다.	산재보험료율을 인상·인하한 비율을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p.10-2

기준	<p>의의</p>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하한 비율을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p>	<p>**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p>
	<p>의의</p>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p>	<p>**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p>

하한 비율을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p.16

기 존	지원수준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frac{3}{5}$ 범위에서 근로자의 보수수준등을 고려
수 정	지원수준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보수수준등을 고려

p.18

기 존	성립신고 해태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요양시작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
	보험료납부 해태	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 ▶ 재해발생한 날까지 내야할 해당 연도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납부액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징수 ×
수 정	성립신고 해태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 다만, 요양시작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 ▶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납부했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 초과×
	보험료납부 해태	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 ▶ 재해발생한 날까지 내야할 해당 연도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납부액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징수 × ▶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중 납부했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 초과×

p.24

기 존	보험가입 노 ^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고용보험 가입신청일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부터 1년 이내인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법 적용제의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수 정	보험가입 노 ^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고용보험 가입신청일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부터 5년 이내인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법 적용제의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p.33

기 준	범위 (별표1)	제조업	500명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 확대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유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	300명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수 정	범위 (별표1)	제조업	500명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 확대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유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광업, 건설업, 운수및창고업	3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p.34

기 준	지원 요건	임금피크제 / 정년60세 이상 사업장에서 55세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2018.12.31.까지 유효)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 자격을 갖춘 자(전문인력)를 고용하는 경우		
수 정	지원 요건	임금피크제 / 정년60세 이상 사업장에서 55세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2018.12.31.까지 유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 자격을 갖춘 자(전문인력)를 고용하는 경우		

p.35-1

기준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조정 / 교대제개편 / 휴업	근로시간 조정/교대제개편/휴업 등을 통하여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훈련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실시하는 경우
		휴직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수정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조정 / 교대제개편 / 휴업	근로시간 조정/교대제개편/휴업 등을 통하여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휴직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p.35-2

기준	지원금액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 휴직 등 으로 단축된 근 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or휴직기간에 대해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frac{2}{3}$ (대규모기업 $\frac{1}{2}$)	단, 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frac{3}{4}$ (대규모기업 $\frac{2}{3}$)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or휴직기간에 대해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frac{2}{3}$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frac{3}{4}$ + (훈련비용 × 고시비율) • 대규모기업은 훈련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1개월 동안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한 금품의 $\frac{2}{3}$ + (훈련비용 × 고시비율) 		
수정	지원금액	근로시간조정, 교대제개편, 휴업, 휴직 등 으로 단축된 근 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or휴직기간에 대해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frac{2}{3}$ (대규모기업 $\frac{1}{2}$)	단, 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frac{3}{4}$ (대규모기업 $\frac{2}{3}$)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or휴직기간에 대해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frac{2}{3}$	

p.43

기 존	노⑩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
수 정	노⑩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

p.46

기 존	상한액 노⑫	10만원
수 정	상한액 노⑫	12만원

p.52

기 존		임신, 출산, 만8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의 계속적 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휴직 허용 않아서 이직한 경우
수 정		임신, 출산, 만8세이하or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의 계속적 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휴직 허용 않아서 이직한 경우

p.56-1

기 존	육아휴직급여액 노⑪⑬	원칙	월 통상임금의 40%을 월별 지급	육아휴직급여액 지급대상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월 통상임금의 40% 해당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육아휴직 일수)(상하한액도 일할 계산)
		상한액	월 100만원	
수 정	육아휴직급여액 노⑪⑬	하한액	월 50만원 (월 육아휴직 급여액에서 유예금액(육아휴직급여의 25%)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50만원 지급)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상한액은 대상자녀가 첫째면 150만원, 둘째이상이면 20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기간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후 근로계약기간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
수 정	육아휴직급여액 노⑪⑬	원칙	월별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 (단, 상한액 150만, 최소지급액 70만)
				육아휴직 4개월째 ~ 육아휴직 종료일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

		(단, 상한액 100만원, 최저지급액 50만원)
	일할계산	육아휴직급여액 지급대상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월별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상한액, 최저지급액도 일할계산)
	분할사용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 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상한액은 대상자녀가 첫째면 150만원, 둘째이상이면 20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75% 는 매월 지급(최저지급액 보다 적은 경우 최저지급액) 나머지 25% 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기간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후 근로계약기간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	

p.56-2

기 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노⑩	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 월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금액 × $\frac{\text{단축전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후소정근로시간}}{\text{단축전소정근로시간}}$ (상한액150만원, 하한액50만원)
수 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노⑩	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 월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금액 × $\frac{\text{단축전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후소정근로시간}}{\text{단축전소정근로시간}}$ (상한액150만원, 하한액50만원)

p.63 용어의 추가

수 정	출퇴근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	-----	---

p.69 페이지 전부 교체

수정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or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		요건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출퇴근중의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	해당 일탈or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 - × 일탈or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치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 사고라 하더라도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자거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배송 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와 그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 - ○ ㉠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참가를 통상적·관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정리하면, 사업주가 주관or 지시했거나 이에 준하는 행사(승인, 통상, 관계)에 참여하거나 준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 - ○		
	휴게시간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		
	기타 업무관련 사고 노④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돌발적인 사태(천재지변 등)로 발생한 사고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 ○ 요양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	
	노조활동과 쟁의행위 중 사고(판례) 노⑩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 ○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중 재해 - ○	노조 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전임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조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쟁의행위 기간중 재해 - × 불법조합활동 중 재해 - ×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조활동 중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상부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 중 재해 - ×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p.72-1

기 존	증감 방법	근로자의 연령이 61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부칙에 의해 2022년까지 62세)
수 정	증감 방법	근로자의 연령이 62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부칙에 의해 2022년까지 62세)

p.72-2

기 존	일용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적용제의 신청 可
수 정	일용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적용제의 신청 可

p.73

기 존	최고·최저 보상기준 보장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 = 전전 보험연도의 7.1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31까지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로 나눈 금액. 적용기간은 1.1~12.31
수 정	최고·최저 보상기준 보장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 = 전전 보험연도의 7.1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30까지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로 나눈 금액. 적용기간은 1.1~12.31

p.87

기 존	이중보상 금지 노 ^㉔	<p>수급권자가 산재법에 따라 보상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p> <p>수급권자가 산재법에 따라 보상 받으면</p> <p>수급권자가 동일사유로 민법 그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 받으면</p>	<p>보험가입자는 동일사유에 대해 근기법상 재해보상 책임 면제</p> <p>▶ 보험가입자는 동일사유에 대해 받은 그 금액한도에서 민법 그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면제.</p> <p>▶ 이 경우 연금받고 있는 자는 일시금 받은 것으로 봄</p> <p>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급여 지급하지 않음 단,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음(즉, 연금은 정상지급)</p>
--------	------------------------------	---	---

수정	이중보상 금지 노 ¹³	수급권자가 산재법에 따라 보상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사유에 대해 근기법상 재해보상 책임 면제
		수급권자가 산재법에 따라 보상 받으면	▶ 보험가입자는 동일사유에 대해 받은 그 금액한도에서 민법 그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면제. ▶ 이 경우 연금받고 있는 자는 일시금 받은 것으로 봄
		수급권자가 동일사유로 민법 그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 방법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의 가액(보험급여 산정당시의 가액)을 말함.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

p.88-1 내용 추가(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기 존			
수 정	<table border="1"> <tr> <td>구상권협의조정기구</td> <td>공단은 보험회사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보험회사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수 있고, 공단과 보험회사 등은 협의·조정을 위해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가능(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없는한 요구에 따라야 함)</td> </tr> </table>	구상권협의조정기구	공단은 보험회사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보험회사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수 있고, 공단과 보험회사 등은 협의·조정을 위해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가능(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없는한 요구에 따라야 함)
구상권협의조정기구	공단은 보험회사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보험회사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수 있고, 공단과 보험회사 등은 협의·조정을 위해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가능(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없는한 요구에 따라야 함)		

p.88-2

기 존	<table border="1"> <tr> <td>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td> <td>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환산한 금액(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td> </tr> </table>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환산한 금액(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환산한 금액(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		
수 정	<table border="1"> <tr> <td>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td> <td>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환산한 금액(받은 금품의 가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td> </tr> </table>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환산한 금액(받은 금품의 가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환산한 금액(받은 금품의 가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		

p.90

기 존	<table border="1"> <tr> <td>대부 대상</td> <td>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공단이 결정하지 않았을 것 근로자의 업무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의학적소견 있을 것</td> </tr> </table>	대부 대상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공단이 결정하지 않았을 것 근로자의 업무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의학적소견 있을 것
대부 대상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공단이 결정하지 않았을 것 근로자의 업무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의학적소견 있을 것		
수 정	<table border="1"> <tr> <td>대부 대상</td> <td>+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공단이 결정하지 않았을 것 +근로자의 업무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의학적소견 있을 것</td> </tr> </table>	대부 대상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공단이 결정하지 않았을 것 +근로자의 업무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의학적소견 있을 것
대부 대상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공단이 결정하지 않았을 것 +근로자의 업무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의학적소견 있을 것		

p.94

기 존	중소기업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포함)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주 (중간에 50명 이상 되더라도 해당 보험연도에는 계속 적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하는 사람. • 건설기계사업 하는 사람. • 퀵서비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 의뢰받아 배송업무하는 사람 •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
수정	중소기업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포함)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주 (중간에 50명 이상 되더라도 해당 보험연도에는 계속 적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하는 사람, • 건설기계사업 하는 사람, • 퀵서비스업자 •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 의뢰받아 배송업무하는 사람 •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일부 제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 •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

p.117

기준	수급권 소멸사유 노③⑬	수급권자 사망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
		자녀or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or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가 25세가 된 때 or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
		장애로 수급권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부모, 손자녀,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or가입자였던 자의 사망당시 그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
수정	수급권 소멸사유 노③⑬	수급권자 사망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
		자녀or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or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가 25세가 된 때 or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
		부모, 손자녀,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or가입자였던 자의 사망당시 그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

기 존	지급정지	배우자에 대한 지급정지	원칙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	
			예외	배우자가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에는 지급 정지 ×
				배우자가 가입자or가입자였던 자의 25세미만 자녀or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의 행방불명	배우자 행방불명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 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의 기간동안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정지			
	배우자 외의 자 행방불명	배우자 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수급권자 중에서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 에 따라 그 소재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			
지급정지 해제		행방불명으로 인해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에 의해 지급 정지를 해제			
수 정	지급정지	배우자에 대한 지급정지	원칙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	
			예외	배우자가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에는 지급 정지 ×
				배우자가 가입자or가입자였던 자의 25세미만 자녀or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의 행방불명	배우자 행방불명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 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의 기간동안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정지	
배우자 외의 자 행방불명	배우자 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수급권자 중에서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 에 따라 그 소재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				
지급정지 해제		행방불명으로 인해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			
입양		입양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	

	지급정지 해제	입양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파양된 때부터 지급정지를 해제
장애등급	장애등급비해당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
	지급정지 해제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지급정지 해제

p.123

기 존	보험료 추후납부	납부신청	가입자는 추납대상기간의 전부or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 可		
		추납대상자와 추납대상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배우자로서 소득 無 or 생계급여수급자 or 의료급여수급자 or 1년이상 행방불명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	보험료 안낸 기간	
			납부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 안낸 기간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 한 자는	병역의무 수행한 기간 (단, 공,군,교,별 기간 제외)	
		추납보험료액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		
		분할납부	분할납부 가능(이자 더해서)		
		추후납부 효과	추납보험료를 내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 ⇒ 추후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		
수 정	보험료 추후납부	납부신청	가입자는 추납대상기간의 전부or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 可		
		추납대상자와 추납대상기간	①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배우자로서 소득 無 or 생계급여수급자 or 의료급여수급자 or 1년이상 행방불명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	보험료 안낸 기간	
			②납부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 안낸 기간	
			③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 한 자는	병역의무 수행한 기간 (단, 공,군,교,별 기간 제외)	
			위 ①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음 (단,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봄)		
		추납보험료액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		
		분할납부	분할납부 가능(이자 더해서)		
추후납부 효과	추납보험료를 내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 ⇒ 추후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				

p.125

기 존	지원수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수 정	지원수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p.127

기 존		보험료, 환수금, 기타 징수금을 징수or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or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정지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전액에 대해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중단	납입고지, 독촉, 체납처분,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有		
수 정		보험료, 환수금, 기타 징수금을 징수or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급여(반환일시금 제외)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or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정지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전액에 대해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중단	납입고지, 독촉, 체납처분,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有		

p.133

기 존	주요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②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③ 보험급여의 관리 ④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수 정	주요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②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③ 보험급여의 관리 ④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136

기 존	현행 부가급여 (령23)	임신·출산 진료비	하나의 태아	50만원
			둘이상의 태아	90만원
수 정	현행 부가급여 (령23)	임신·출산 진료비 (유산·사산포함)	하나의 태아	50만원
			둘이상의 태아	90만원

p.138

기 존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공단은 현역병, 전환복무된 자, 군간부후보생,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요양급여비용)을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으로부터 예약 받아 지급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공단에 예약해야 한다.
수 정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공단은 현역병, 전환복무된 자, 군간부후보생,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요양급여비용)을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경찰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약 받아 지급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경찰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공단에 예약해야 한다.

p.140-1 (보험료율)

기 존	원칙	1천분의 80 범위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1만분의 612
수 정	원칙	1천분의 80 범위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1만분의 624

p.140-2

기 존	보험료부과점수	현재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
수 정	보험료부과점수	현재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

p.157

기 존	구성인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수 정	구성인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p.169-1 해설 추가

기 존	
수 정	38. (O) 단, 출퇴근 재해 중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결정시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p.169-2

기 존	043 (x) 6월 30일, 고용노동부령
수 정	043 (x) 5월 30일 → 6월 30일,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령. 단, 출퇴근 재해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결정시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p.170-1

기 존	05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
수 정	05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인상·인하한 비율을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

p.170-2

기 존	053 (x) 개정 전 40억, 20명이었으나 개정 후 20억, 10명이다.
수 정	053 (x) 2017.12 개정으로 60억원 이상, 30명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p.171

기 존	057 건설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산재예방요율”)로 할 수 있다. ()
수 정	057 건설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산재예방요율”)로 할 수 있다. ()

p.176-1

기 존	099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수 정	099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p.176-2

기 존	099 (×) 2분의 1 ⇒ 5분의 3
수 정	099 (×)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p.213

기 존	067 (×) ④는 삭제되었다.
수 정	067 (×) ②, ④는 삭제되었다.

p.222

기 존	133 (×) 8만 6천 원 ⇒ 10만원
수 정	133 (×) 8만 6천 원 ⇒ 12만원

p.229-1

기 존	203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하며, 상한액은 월 100만 원 하한액은 월 50만 원으로 한다. ()
수 정	203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2개월의 된 자의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최소지급액은 월 70만 원으로 한다. ()

p.229-2

기 존	204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수 정	204 (×)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p.229-3

기 존	205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15를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한 경우에 지급한다. ()
수 정	205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를 매월 지급하며,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p.229-4

기 존	205 (x) 100분의 15 ⇒ 100분의 25,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수 정	205 (x)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p.229-5

기 존	207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수 정	207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p.234

기 존	⑤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은 10만 원이며(고보령 §68①),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1/2 이므로(고보법 §46),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5만 원이다.
수 정	⑤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은 12만 원이며(고보령 §68①),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1/2 이므로(고보법 §46),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 원이다.

p.236 10번 해설 추가

수 정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

p.239-1

기 존	<p>15 <노무 2011>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p>
	<p>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월 (나)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다)만 원이다.</p> <p>① 가 : 100분의 40 나 : 100 다 : 50 ② 가 : 100분의 40 나 : 200 다 : 100 ③ 가 : 100분의 50 나 : 200 다 : 100 ④ 가 : 100분의 100 나 : 100 다 : 50 ⑤ 가 : 100분의 100 나 : 200 다 : 100</p>
수 정	<p>15 <노무 2011>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p>
	<p>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월 (나)만 원이고, 최소지급액은 월 (다)만 원이다.</p> <p>① 가 : 100분의 40 나 : 100 다 : 50 ② 가 : 100분의 40 나 : 200 다 : 100 ③ 가 : 100분의 50 나 : 150 다 : 70 ④ 가 : 100분의 80 나 : 150 다 : 70 ⑤ 가 : 100분의 100 나 : 150 다 : 100</p>

p.239-2

기 존	<p>15 ① 고보법 §95②.</p>
수 정	<p>15 ④ 고보법 §95②. 참고로,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40%로 하며, 상한액은 100만 원, 최소지급액은 50만 원으로 한다.</p>

수정	<p>43 <노무 2016>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p>
	<p>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p>
	<p>① 50만 원 이하 ② 100만 원 이하 ③ 150만 원 이하 ④ 200만 원 이하 ⑤ 전액</p>

p.256-2

기 존	<p>43 ③ 고보령 §58의3.</p>
수 정	<p>43 ⑤ 고보령 §58의3.</p>

p.258-1

기 존	<p>47 <노무 2017> 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甲이 1개월 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음)</p>
	<p>① 20만 원 ② 30만 원 ③ 40만 원 ④ 50만 원 ⑤ 60만 원</p>
수 정	<p>47 <노무 2017> 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甲이 1개월 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음)</p>
	<p>① 30만 원 ② 37만 5천 원 ③ 40만 원 ④ 45만 5천 원 ⑤ 50만 원</p>

p.258-2

기 존	<p>47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고보령 §104의2). 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 월통상임금의100분의60에 해당하는금액 × $\frac{\text{단축전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후소정근로시간}}{\text{단축전소정근로시간}}$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p>
	<p>따라서, 문제의 경우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 $(200만 원 * 60\%) * ((40-30)/40) = 120만 원 * 10 / 40 = 30만 원$</p>
수 정	<p>47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고보령 §104의2).</p>

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
 월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times \frac{\text{단축전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후소정근로시간}}{\text{단축전소정근로시간}}$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따라서, 문제의 경우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

$$(200\text{만 원} \times 80\%) \times ((40-30)/40) = 150\text{만 원} \times 10 / 40 = 37.5\text{만 원}$$

※ 200만 원의 80%는 16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므로, 150만 원으로 풀어야 한다.

p.285

기 존	226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 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수 정	226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의 가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p.287

기 존	236 근로복지공단이 직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수 정	236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p.298

기 존	⑤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함)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산재법 §87조②).
수 정	⑤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받은 금품의 가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산재법 §87조②).

p.336 해설 추가

수 정	144-⑤ (×) 개정법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

p.339-1

기 존	163 보험료, 환수금,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 및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수 정	163 보험료, 환수금,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 및 급여(반환일시금 제외)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p.339-2

기 존	163 (×)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야 소멸
수 정	163 (×) 급여(반환일시금 제외)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야 소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p.348

기 존	<p>16 <노무 2017> 국민연금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⑤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수 정	<p>16 <노무 2017> 국민연금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급여(반환일시금 제외)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⑤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392

기 존	<p>21 <노무 201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⑤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	---

수정	<p>21 <노무 201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⑤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	---

p.394-1

기 존	<p>25 <노무 2016>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다. ② 대통령이 위촉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촉될 수 없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사무국을 둔다.</p>
수 정	<p>25 <노무 2016 유사>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다. ② 대통령이 위촉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촉될 수 없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사무국을 둔다.</p>

p.394-2

기 존	<p>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이 있다(사기법 §21①③, 사기령 §9).</p>
수 정	<p>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이 있다(사기법 §21①③, 사기령 §9).</p>